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채우진 의원)

의안 번호	23-13
----------	-------

발의년월일 : 2023. 2. .

발의자 : 고병준,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장정희,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 1. 개정이유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유형의 변경, 위탁사무의 내용의 전면 변경 등의 중요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나. 민간위탁사무의 중요내용 변경 시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다.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

## 3.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붙임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3. 1. 31. ~ 2. 5.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u></p>
<p>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u>경우에는</u>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 ----- ----- <u>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생략)</p> <p>② <u>제5조제1항에</u> 따른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5조제2항</u>----- ----- -----.</p> <p>1. ~ 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 계 법 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4호, 2022. 11. 29., 타법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전형준
연 락 처	02-3153-8533